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김동규 외 1명  
소유물건(2024타경38881)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감정평가서번호: gc01-2411-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관감정평가사사무소

##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덕관

감정평가액	이억일백이십구만이천원정 (₩201,292,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홍덕의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동규 외 1명 (2024타경38881)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11.18	2024.11.16 ~ 2024.11.18	2024.11.19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412 869.5 1,739x----- 1,739 이	토지	2,281.5    여	-    백	201,292,000
	합계					₩201,29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569	전	계획관리	660	660	113,000	74,580,000	수목 포함.
2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569-1	전	계획관리	752	752	113,000	84,976,000	수목 포함.
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33-1	전	계획관리	1,739*434.7 <sub>5</sub> /1,739	434.75	48,000	20,868,000	김동건 지분
					1,739*434.7 <sub>5</sub> /1,739	434.75	48,000	20,868,000	김동규 지분
								* 매각지분	소유자 김동건 지분 434.75/1,739 김동규 지분 434.75/1,739 각 전부.
								* 접도구역	저촉부분 참작, 수목포함.
<b>합 계</b>								<b>₩201,292,000.-</b>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 감정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목적

본건 중 기호1, 2는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금성면사무소에서 북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240미터 지점에,

기호3은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계천사거리에서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280 미터 지점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의뢰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본건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며,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 방법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이 있음.

####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 1) 토지의 평가

본건 토지의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내 최근 매매사례 중 대상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여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감정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 (1) 조사기간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를 2024년 11월 16, 18일에 시행하여 평가대상 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2) 기준시점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인 2024년 11월 18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 5. 기타 참고사항

### 1, 지상 수목에 대한 평가의견

본건 기호1-3 지상에 자생하고 있는 경제성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2, 공동소유에 관한 의견

본건 중 기호3은 공동소유 부동산으로서 매각지분 김\*건, 김\*규 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난하여 대상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으며,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거하였음.

### 3, 접도구역 저축부분에 대한 평가의견

기호3 토지 남동측 극히 미미한 경계선부분이 접도구역에 저축되어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 4, 지적경계 등에 관한 의견

본건 토지는 지적경계가 항공사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과 지형지물 등에 의한 목측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정확한 지적경계는 측량감정이 요망되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Ⅱ.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 1. 대상토지의 개요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m <sup>2</sup>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3년 개별지가 (원/m <sup>2</sup> )	비고
1	하동군면리 금성향리 569	전	660	전	계획 관리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65,400	현황 맹지
2	하동군면리 금성향리 569-1	전	752	전	"	"	"	65,400	"
3	하동군면리 금남천리 333-1	전	1,739	전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급경사	27,900	-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 산출

####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등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한 아래 비교표준지가 특성이 유사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면적 (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 공시지가 (원/m <sup>2</sup> )	비고
A	하동군면리 금성향리 566	562	전	전	계획 관리	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	65,700	-
B	하동군면리 금남천리 325	2,026	전	전	"	맹지	부정형 급경사	29,7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동일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구 분	시점수정치	지가변동률
하동군 (24.01.01~24.11.18 ) (계획관리)	경상남도 하동군 (24.01.01~24.11.18 ) (계획관리)  2024.01.01 ~ 2024.09.30 : 0.405 2024.09.01 ~ 2024.09.30 : 0.068  $( 1 + 0.00405 ) * ( 1 + 0.00068 * \frac{49}{30} )$ $\approx 1.00517$	0.517 % 상승
※2024년 01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는 지가변동률이 고시되었으나, 그 이후는 현재 미 고시되어 그 추이가 09월 변동률과 동일할 것으로 보고 일수로 안분하여 추산한 것임.		

(3)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 시 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개별요인 비교

### 1) 농경지대의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건	항목	세항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일련 번호	비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2	A	-	0.90	1.00	1.00	1.00	1.00	0.950
3	B	-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 내용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비교 시 기호1과2는 A와 비교 시 인근 취락 등예로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한 편이고  기호3은 B와 비교 시 특성이 유사하고 개별요인도 상호 유사한 편임.							

### (5) 그 밖의 요인 보정

####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5호와 대법원판례(2007.7.12.선고2006두 11507, 2004.5.14선고 2003다38207 등)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999.6.21.토관 58342-471, 1999.5.20 기획 0100-725)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 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인근 평가선례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기준시점	구분	토지단가 (원/m <sup>2</sup> )	비고
①	하동군 금성향리 524-5	전	계획관리	2023-04-13	담보	122,000	기호1, 2의 비교 인근선례
①-1	하동군 금성향리 607	전	"	2021-11-03	담보	90,000	-
②	하동군 금남계천리 336	전	"	2023-02-09	담보	37,000	-
②-1	하동군 금남계천리 326	전	"	2021-04-13	담보	44,000	기호3의 비교 인근선례
본건	하동군 금성향리 569 외	전	"	2023-05-12	담보	83,000 [기호1, 2]	기호1-3 총감정평가액 ₩156,323,500
본건	하동군 금남계천리 333-1	전	"	"	"	45,000 [기호3]	-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등

### 3) 본건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구분	지가수준
인근 유사 토지	공항리 계획관리지역 내 유사한 농경지는 @90,000-120,000원/m <sup>2</sup>  계천리 계획관리지역 내 유사한 농경지는 @30,000-50,000원/m <sup>2</sup> 수준 내외로 탐문조사 되고 있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선례 ①, ②-1을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	---

※ 비교표준지 A와 선례 ①과의 비교

구분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	122,000	1.00701	1.000	0.950	116,712	≈1.767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 가격	65,700	1.00517	-	-	66,039			
비교요인	시점수정	경상남도 하동군 (23.04.13~24.11.18 ) (계획관리) ≈ 1.00701 산정식 기재 생략						
	지역요인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 계
		-	0.95	1.00	1.00	1.00	1.00	0.950
		비교표준지는 비교선례와 비교 시 농로의 상태 등은 세로(불)에 접한 비교표준지가 열세하나 취락 등에서의 접근성 등은 우세하여 전체적인 접근조건에서 약간 열세한 편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비교표준지 B와 선례 ②-1과의 비교

구분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	44,000	1.03677	1.000	1.000	45,617	≒1.528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 가격	29,700	1.00517	-	-	29,853			
비교요인	시점수정	경상남도 하동군 (21.04.13~24.11.18 ) (계획관리) ≒ 1.03677 산정식 기재 생략						
	지역요인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개별요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누 계
		-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표준지는 비교선례와 비교 시 특성이 유사하고 개별요인도 상호 유사한 편임.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본건과 비교 가능한 인근지역의 유사한 부동산의 평가선례, 거래사례, 지가수준, 본건과 비교인근선례의 감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구 분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보정치 결정
표준지 A	1.767	1.800
표준지 B	1.528	1.6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적용단가 (원/m <sup>2</sup> )	비고
	기호	공시지가 (원/m <sup>2</sup> )							
1	A	65,700	1.00517	1.000	0.950	1.800	112,927	113,000	-
2	A	65,700	1.00517	1.000	0.950	1.800	112,927	113,000	-
3	B	29,700	1.00703	1.000	1.000	1.600	47,854	48,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격 산출

### (1) 비교거래사례 선정

본건과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 물적, 위치적 유사성이 인정되며, 인근에 소재하고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아래 사례 중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된 `a-3, b-2`가 타사례보다 비교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기호	소재지	토지 면적 (㎡)	지목	용도지 역	거래가액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a	하동군 금성면 중앙리 1337-70	344	잡	계획 관리	100,000,000 [290,698]	2024-04-16	-
a-1	" 601-49	43	답	"	3,000,000 [69,767]	2023-11-22	-
a-2	" 632	227	답	"	16,000,000 [70,484]	2024-07-09	-
a-3	" 601-10	198	전	"	20,000,000 [101,010]	2022-09-16	기호1, 2의 비교 거래사례
b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45	148	전	"	33,000,000 [222,973]	2022-04-11	-
b-1	" 993-5	3,874	답	"	155,000,000 [40,010]	2024-04-05	-
b-2	" 474-1	544	전	"	35,000,000 [64,338]	2023-10-06	기호3의 비교 거래사례

\* 출처: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2) 사정보정

비교거래사례는 적절한 시세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 보정은 없음.(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국토교통부 고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음.

구 분	시점수정치	지가변동률
하동군 (22.09.16~24.11.18 ) (계획관리)	경상남도 하동군 (22.09.16~24.11.18 ) (계획관리) ≒ 1.01070	1.070 % 상승
하동군 (23.10.06~24.11.18 ) (계획관리)	경상남도 하동군 (23.10.06~24.11.18 ) (계획관리) ≒ 1.00576	0.576 % 상승

(4)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거래사례는 상호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시 됨.  
(1.000)

(5)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치의 결정

일련 번호	거래 사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 2	a-3	-	1.00	1.00	1.15	1.00	1.00	1.150
3	b-2	-	0.75	1.00	1.00	1.00	1.00	0.750

본건은 거래사례와 비교 시  
기호1, 2는  
거래사례 a-3보다 면적·형상 등 획지조건에서 우세, 여타조건은 상호 유사한  
편이며,  
기호3은 b-2보다 간선도로 등에로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에서 열세하고 여타조건은  
유사한 편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적용단가 (원/m <sup>2</sup> )	비고
	기호	단가 (원/m <sup>2</sup> )							
1, 2	a-3	101,010	1.000	1.01070	1.000	1.150	117,404	117,000	-
3	b-2	64,338	1.000	1.00576	1.000	0.750	48,534	49,000	-

### 4. 토지 단가의 결정

(1) 토지 단가 검토

일련 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원/m <sup>2</sup>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원/m <sup>2</sup> )	비고
1, 2	113,000	117,000	-
3	48,000	49,000	-

(2) 토지 단가의 검토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와 비교 시 그 차액이 미미하여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단가로 토지단가를 결정함.

(3) 토지 단가의 결정

일련번호	토지 단가(원/m <sup>2</sup> )	비고
1, 2	113,000	-
3	48,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Ⅲ. 감정평가액 및 결정의견

### 1. 결정의견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사항, 부근 동유형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사례, 인근선례, 본건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감정평가액

구분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201,292,000	-
합 계	₩201,292,000.-	-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중 기호1, 2는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금성면사무소에서 북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240미터 지점에,  
 기호3은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계천사거리에서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280 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임야` 군데군데 농가취락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농촌지대임.

## (2) 교통상황

기호1과 2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영농기계 등은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기호3은 지적도상 맹지로서 주변에는 대나무가 성장하고 있고, 상당기간 휴경상태로 방치되어 수풀이 무성하여 현재 진출입에 다소 불편한 상태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2는 부정형의 농경지로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는 대나무 등 수목이 성장하고 있음.

기호3은 서측으로 하향 환경사진 부정형의 농경지로 상당기간 휴경상태로 일부 지상에는 감나무 등 수목이 성장하고 있음.

##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과 2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동측 약10 미터 지점에 신도길이 위치하고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3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장기간 휴경상태로 주위에 수풀이 무성하고 대나무 등이 성장하고 있어 진출입에는 약간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태임.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에 속함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 3토지 상에 성장하고 있는 경제성이 미미하고, 장기간 관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짐작되는 대나무`감나무` 기타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3 토지는 남동측 극히 미미한 경계선부분이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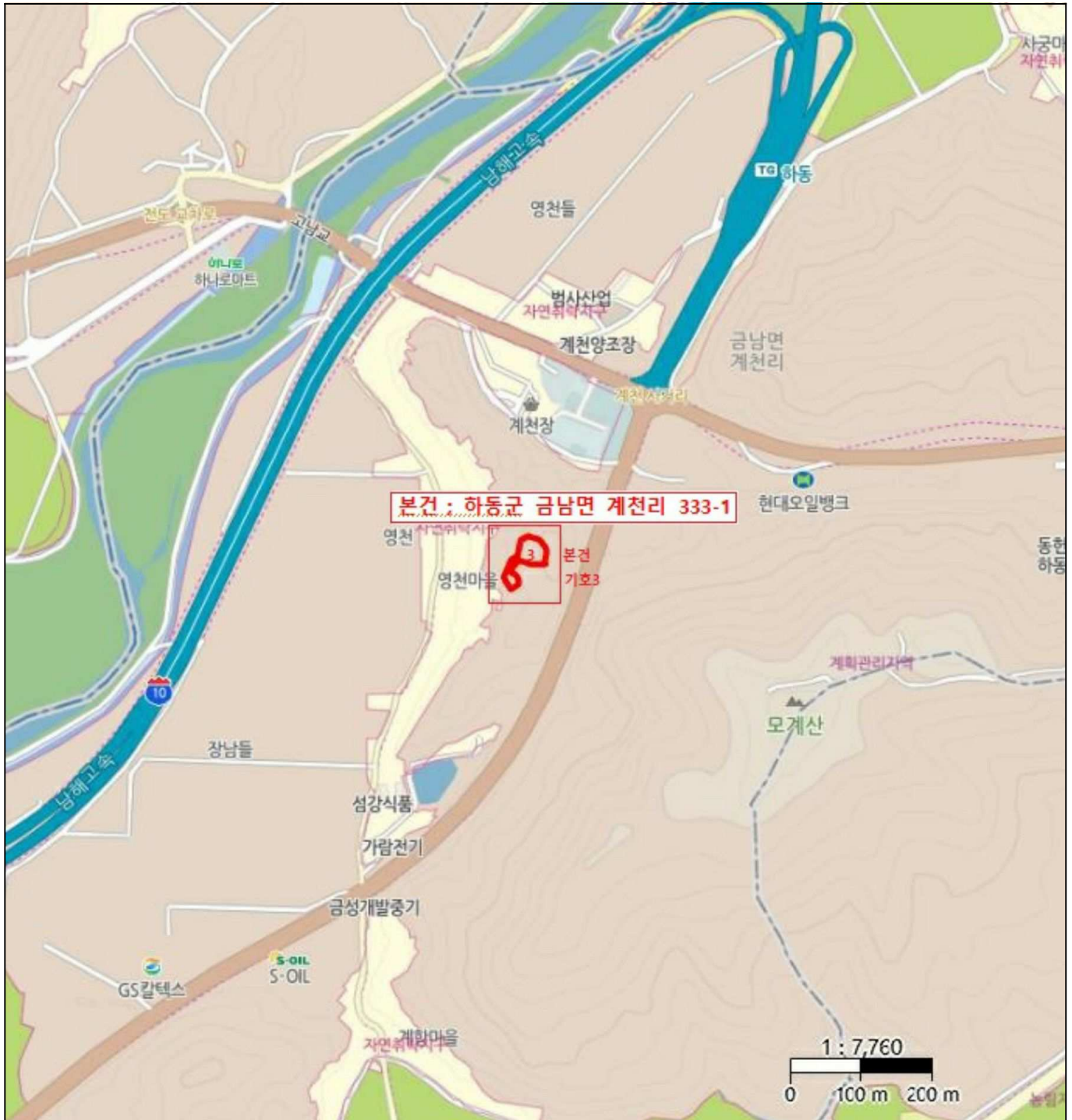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569 외
-----	------------------------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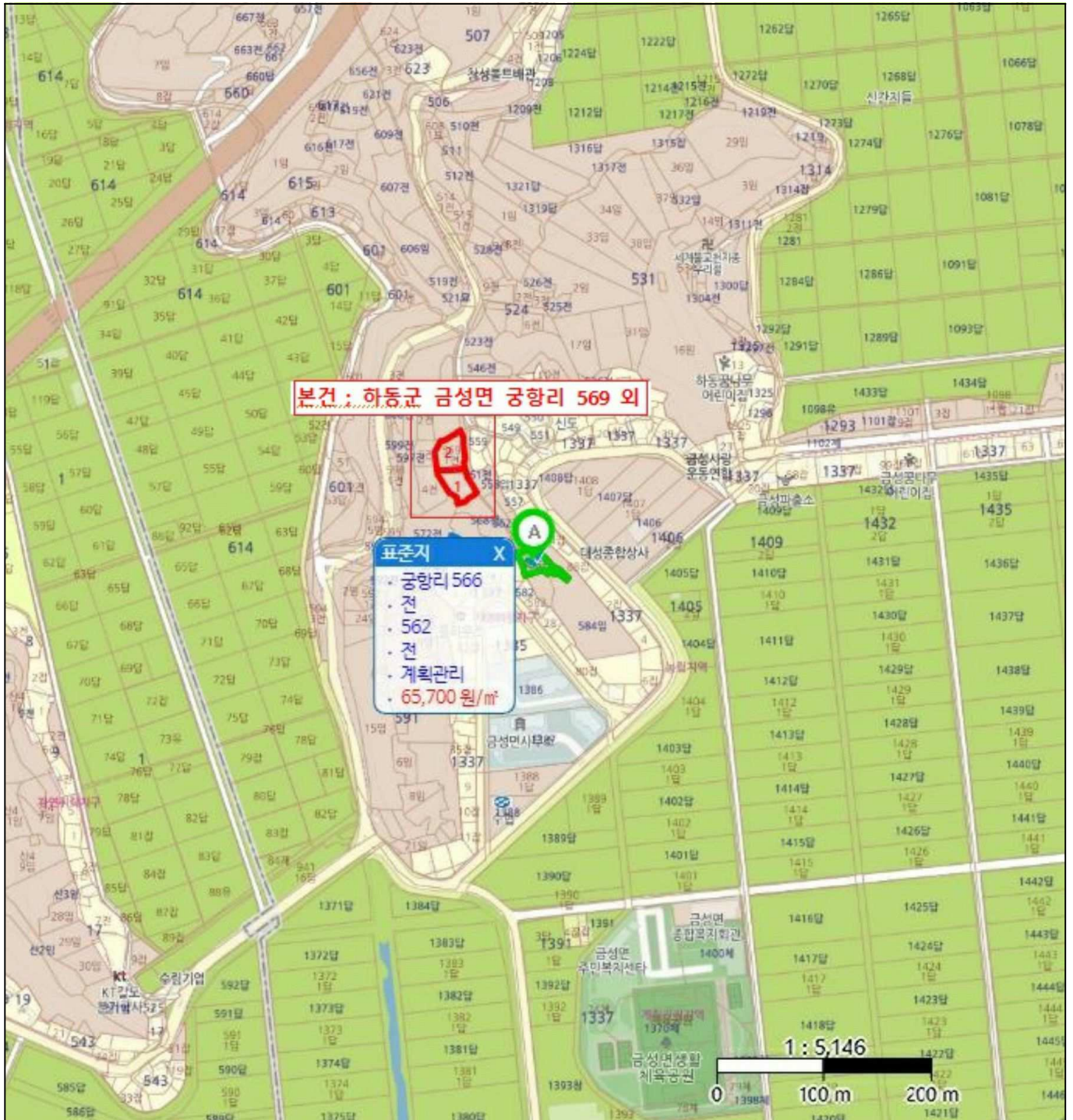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33-1
-----	------------------------



# 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569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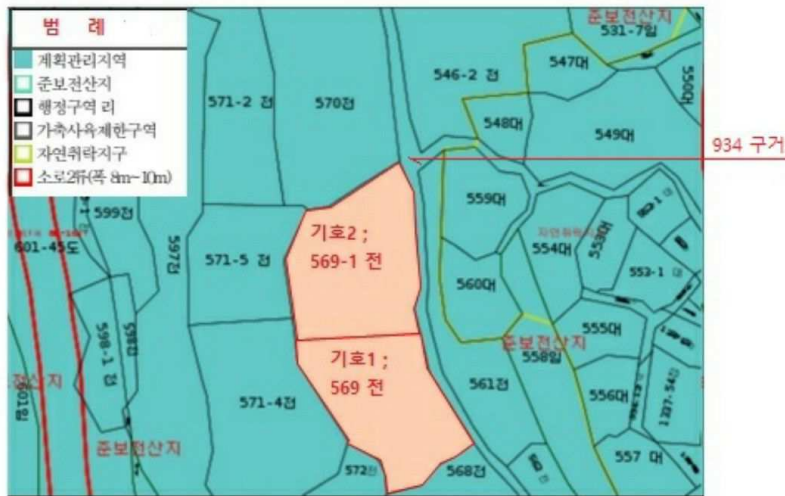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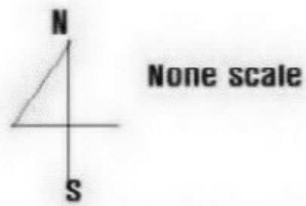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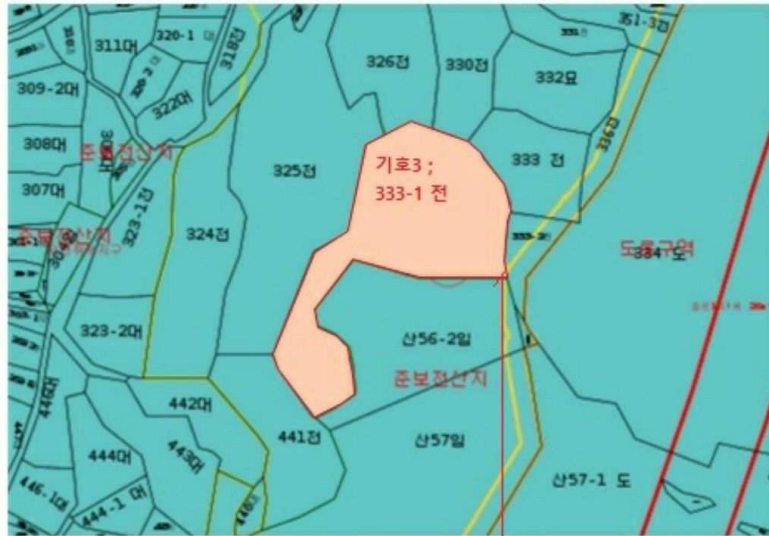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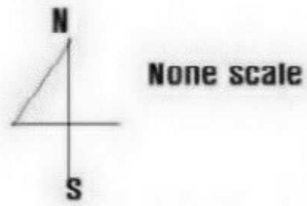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33-1



# 지 적 도



# 지 적 도



전도구역 저축부분

# 사 진 용 지



기호1  
남측에서 북측을 향하여 원거리 촬영



기호1  
북측에서 남측으로 동측부분을 기준으로 촬영

# 사 진 용 지



기호1, 2  
북측에서 남측을 향하여 근접 촬영



기호1, 2  
북측에서 남측으로 원거리 촬영

# 사 진 용 지



기호1, 2  
북측에서 남측을 향하여 촬영



기호1 남측 경계선부근에서  
남측을 기준으로 바라본  
부근의 상황 등

# 사 진 용 지



기호3 전경  
서측에서 동측을 향하여 원거리 촬영



기호3  
남서측에서 북동측을 기준으로 촬영

# 사 진 용 지



기호3  
남서측에서 북동측을 향하여 촬영



기호3  
남서측에서 북동측부분을 기준으로 촬영

# 사 진 용 지



기호3  
북동측에서 남서측부분을 기준으로 촬영

**현황사진의 본건 등에 대한 위치  
표기는 개략적으로 표기한 것이며**

**정확한 위치 및 지적경계 등은  
측량감정이 요망되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